

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

1. 강북구에서 실시하는 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사업(업무)내용 등 근로조건

- 사업(업무)내용:
- 작업장소:
- 근로기간: 2016. 07. 01. ~ 10. 31.
- 임금 등 급여조건
 - 1주25시간 150,750원, 65세 이상 1일 3시간 18,090원(1시간당 6,030원)
 - 1일 간식비 등 3,000원 지급(근무일에 한함)
 - 임금 계좌입금(제출한 본인명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계좌 이체)
 - 임금지급: **다음달 5일 이내** 지급(단, 5일자가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)
 - 지각,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
 - 1주(근로계약일부터)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
 -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(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지급)
 - * 예) 1개월: 3.1.~3.31.까지
- 근무시간
 - 월~금요일(1일 5시간), 65세이상 1일3시간근무, (중식시간: 12:00~13:00)
 - 단,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근로능력 미달인 사람 등 근로시간 조정 가능
- 중복 참여자 조치
 -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전일제(주 30시간 이상)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* **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**

3. 기타 사항
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.
- 참여자 심사 후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또는 재산이 2억원 초과 등 사업참여 적격인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함.
-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『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』에 따라 시행되며, 정부 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·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6. 7. .
강 북 구 청 장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,
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합니다.

성명:

생년월일:

(인, 서명)